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1. 2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월 10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8년 1월 11일
- 다. 상정 및 심사일자 : 제133회 임시회 제3차위원회 (2008. 1. 2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채진묵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신설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나. 주요 개정 골자

1)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민간부문 문화시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문화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의 요율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25조)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문화 시설을 「민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요율을 당해 공유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함

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문화 시설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거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대부분의 요율을 당해 공유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함

2) 시장 및 상점가내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규정 신설함 (안 제28조제3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함

3)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납부 특례 규정을 삭제함 (안 제34조)

-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특례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삭제함

4)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조성원가 매각 규정을 변경함 (안 제35조)

-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하는 규정을 영 제42조 규정(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에 의한 조성원가로 변경하여, 민간부문 투자확대를 유도함

5)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함 (안 제89조)

-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총 보상금 최고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증액하고, 개별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증액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잡종재산의 대부료 등의 요율과 김면규정 등을 일부 신설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의 개정규정에 의거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개정내용>

- 안 제25조제3항제4호를 신설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정하고, 동조제4항제8호 및 제9호를 신설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와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로 운영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고자함.
- 안 제34조제5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89조제1항에서는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총 보상금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상향 조정하였으며, 개별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상향 조정하였음.

<검토의견>

- 동 건은 문화시설 확충과 영리·비영리법인 및 개인의 문화시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요율을 개선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총 보상금

한도액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상향조정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은 2007.12.26 일부개정되어 공포시행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의 관계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